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원자력사업자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20142호, 2024.1.23. 공포, 2024.7.24. 시행)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시행령 제7조제4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10조”를 각각 “법 제1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는 “원자력사업자”로, “보고를 받은”은 “보고를 한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 조치 보고의 공개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<u>법 제10조</u> 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	제7조(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 조치 보고의 공개) ① ----- ----- <u>법 제10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10조</u> 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.	② <u>법 제10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<u>법 제10조제2항</u> 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

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
다. 이 경우 “원자력안전위원
회”는 “원자력사업자”로, “보고
를 받은”은 “보고를 한”으로 본
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2) 397 - 7267